

# 朝鮮後期 社會身分 變動問題에 대한 研究

## —軍役의 良賤混成과 관련된 側面—

李 謙 周\*

I. 머리말

II. 成立期 東伍軍의 身分構成에  
대한 檢討

III. 東伍軍 身分構成 變化의  
實相

IV. 맺음말

### I. 머리말

朝鮮 後期社會에 있어서의 身分은 일반적으로 그 區分이 크게 混淆되  
어 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sup>1)</sup> 즉 조선후기의 사회적 혼란과 농업·商  
品經濟의 발달에 따른 社會身分觀의 변화와 아울러 身分間의 上下變動  
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전반적인 이해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사회신분의  
實相을 보다 선명하게 파악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究明되어야 할 문제  
들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社會發展의 次元으로서의 이해에 相  
衝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설명이나, 身分區分이랄가 身分  
의 概念과 관련된 문제점도 좀 더 보완·穿鑿되어야 하리라 여겨진  
다. 또한 身分問題를 제반제도와의 관련속에 파악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軍事制度的 側面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軍役に  
연관하여, 財政的 收取對象으로서만이 아니라 본래의 군사적 역할로서

\* 교수(인문과학 연구소장)

1) 이러한 일반적 이해는 조선후기의 身分을 兩班·中人·良人·賤人으로서 4區分하  
는 차원에서의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전기에 대한 良賤二分論에서도 後  
기에 대하여는 4區分 또는 3區分을 부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  
도 身分이라던가 階層등의 概念上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는 전제하에서의 이  
해라고 해야 하겠다.

의 軍役을 통한 考察이 보다 實體에 근접하는 한 길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다 아는 바와 같이 壬辰倭亂을 겪으면서 본격화된 軍制, 軍役의 변화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를테면 五軍營의 설치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良役으로서의 軍役 자체가 收布化하여 재정적 문제로서 부각되는 한편, 給料兵이 등장하고 일부 番上兵이 존재하지만 東伍軍과 같은 새로운 名色の 兵種이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軍制 改編에 대하여 研究가 진행되어 왔고,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壬亂의 渦中에 비롯된 것으로 三手兵의 養成을 위한 東伍法에 의한 편성이라는 방향에서의 진행으로 이해된다.<sup>2)</sup>

이렇게 三手技法으로 훈련하는 東伍軍등은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실질적 軍兵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일단의 究明이 이루어진 東伍軍의 경우에 그 構成身分이 대체로 賤人, 특히 私奴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었다. 各 鎭管은 물론 五軍營에 까지도 所屬되어, 적어도 地方軍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東伍軍의 신분이 그 成立期에는 良·賤混成으로 나타나고 18C 初期부터는 국가적으로 賤隸化 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sup>3)</sup>

여기에서 良賤混成의 구체적 내용과 賤隸化조치의 實相등을 身分的秩序·軍役의 變質 문제와 연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東伍軍 자체에서 더 나아가 조선후기 身分變化 문제에 대한 접근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 것이다.

## II. 成立期 東伍軍의 身分構成에 대한 檢討

朝鮮後期の 軍制改編이 비롯된 壬辰倭亂中の 변화에 대하여 흔히引

2) 後期 軍制의 變化와 東伍軍에 대하여 다음의 研究가 있다.

① 車文燮：朝鮮時代軍制研究，檀國大學敎 出版部，1973.

② 陸士韓國軍制史研究室：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編，1977.

3) 前掲書①，VII 東伍軍 研究 pp. 205~207. pp. 211~214.

用되는 다음의 記錄은 그 大綱을 알려주고 있다.

敎士를 各道에 分遣하여 三手技法(砲·射·砍法)을 訓練하다. 哨軍을 置하다. 때에 京城에 訓練都監을 설치하여 募兵訓練하고 外方에도 哨軍 또는 東伍軍을 두어 良民·公私賤人을 논하지않고 壯丁을 뽑아 充額하였으며 威書之制(威繼光의 紀効新書: 筆者 註)로 團束하여 三手を 敎鍊하였다. 御史를 分遣하여 試閱케 하니 이로부터 軍額이 자못 增益되었다. 本朝 六軍의 法은 오로지 良民으로 着籍된 것을 가려서 保 三人을 주고 武藝를 試驗하여 軍職을 주었다. (中畧) 그런데 賤人從母之法이 오래 施行되므로서 良民이 日縮하고 軍額이 大耗되니 이에 이르러 公私賤人을 盡用하여 東伍에 넣었는데 威氏의 制도 또 陣書와 異同이 있었다. 京軍은 官으로부터 廩養하니 兵農이 이미 나뉘었고, 外軍은 이미 本役이 있는데 다시 東伍에 넣어 給保도 廩食도 없으니 被抄者는 怨苦하여 逃亡이 서로 이어 州縣의 弊가 되었다.<sup>4)</sup>

여기서 東伍軍(혹은 哨軍)<sup>5)</sup>은 良民과 賤人의 混成이었으며, 그 緣由를 從母法의 久行으로 良民이 줄었기 때문에 軍額을 充益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東伍軍의 弊까지 논하고 있다. 물론 이 記錄이 平壤을 奪還할 무렵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軍事力強化의 諸般 措置라던가, 東伍法에 의한 軍隊의 새로운 編成 背景 및 그 過程등의 여러 側面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訓練都監과 東伍軍의 설치로 결말지어졌다고 할 수 있는 壬辰倭亂中의 軍事力 增強의 努力은 漢城이 회복되고 朝廷이 다시 돌아오고 있던 宣祖26年 前半에는 本格化되었고, 그 論議가운데 軍兵抄出의 身分勿拘할 뜻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同 6월에 下三道都體察使인 柳成龍은 精

4) 宣祖修正實錄 卷28, 27年 甲午 12月.

5) 「哨軍」과 「東伍軍」은 東伍法으로 편성된 군대의 異稱으로 그 기본단위를 哨로 보아 「哨軍」이라 하고 당초 訓練都監軍의 경우에는 그렇게 指稱하였으며, 地方軍의 경우는 「東伍軍」으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韓國軍制史 近世朝鮮後期編 p. 31 參照.

兵抄擇·砲殺手養成·火器製造등의 方策을 建議하였으며<sup>6)</sup>, 이 建議는 施行에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 바,<sup>7)</sup> 그 가운데

各邑에서 膽勇之人을 抄出함에 公私賤·士族·庶孽을 勿論하고...<sup>8)</sup>

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實行되어 갔으니, 備邊司에서 砲手養成을 강조하면서 砲手 二百名을 先設하는데 閑良·公私賤을 勿論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sup>9)</sup>, 東伍軍 編成이 本格化되면서 보다 구체적 조치가 취하여 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해 2월에 宣祖가 大臣및 備邊司 堂上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宣祖와 抑成龍은 다음과 같이 私賤의 경우에 대한 문제와, 그러나 私賤抄發을 強行하려는 意志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成龍이 “公賤私賤을 勿論하고 모두 括兵하여야 합니다”라고 하니 上이 ‘賊이 물러간 후에 그 主人이 찾을텐데 혼련도감의 號令이 또한 행하여 질 수 없지 않을가’라고 하였다. 成龍이 말하기를 ‘賊이 물러간 뒤가 아니라 지금도 그러합니다.’라고 하였다. 上이 ‘이미 奴主之分이 있으니 그 上典에 종도록 處置하라.’고 이르매 成龍이 ‘어찌 사람마다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바로 妻妾이라도 行伍에 편성시킬 때입니다. 國初에

6) 西厓文集 卷6, 書狀. 그는 6月中에

①乞抄擇精兵以爲後圖狀.

②再乞鍊兵且倣浙江器機多造火砲諸具以備後用狀.

③募京城軍卒練習學江火砲狀

등을 연이어 올리고 있었다.

7) 宣祖實錄 卷39, 36年 6月 己丑條.

備邊司啓曰 伏見都體察使柳成龍狀啓二道(中畧) 將狀啓事意 不論於兩南監司 令兵水營大邑及武將守令所守之邑 選兵操練 打造器機 日夜學習 而賞典及優恤等事 一如狀啓之意 本司畧成事目(中畧) 上曰(中畧) 其言則皆至言也 在今備邊司 無有爲此一言者 其言皆體行 無替可也.

8) 前掲 西厓文集 書狀. ②再乞鍊兵且倣浙江器機多造火砲諸具以備後用狀.

… 於各邑 抄出有膽勇之人 勿論公私賤士族庶孽 廣加學級 如使一道之內 得銃手數千則足可以禦敵….

9) 宣祖實錄 卷40, 26年 7月 庚辰.

金宗瑞는 臺諫이 下鄉하면 오히려 이도 軍役に 充定하려고 하였답니다. 지금이 어느때라고 감히 奴主라고 말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sup>10)</sup>

또한 海州의 鍊兵事에 대하여 良人·公私賤·內奴·庶孽을 勿論하고 分等抄出하여 東伍軍을 편성하되, 그 身役을 盡蠲하며 私賤의 成才者에 대하여는 그 主人에게 官爵으로 賞주거나 他奴로 賈아 주도록 조치된 바 있다.<sup>11)</sup>

이렇게 신분상으로 混合的인 편성을 强行한 東伍軍의 문제점은 처음부터 論難되기도 하였지만,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일에 빈번히 동원된 다던지, 실제에 있어서는 臺役に 시달리게 되는 弊端등이 점점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예컨대 丁酉再亂중에 備邊司에서는, 東伍軍이란 것을 有無役 公私賤을 勿論하고 練鍊을 감당할 만한 者들로 편성한 本意는 이를테면 직접적인 戰鬪에 쓰자는 데 있지 兵曹가 交代로 上番시켜 役處에 쓰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면서, 그 가운데는 賤人뿐이 아니라 兩班·儒士·衙前등 士木의 役을 감당할 수 없는 부류까지 들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욱 한때 平安·黃海·咸鏡의 三道東伍軍을 徵發하여 京師일대를 지키게 한 것도 일시적인 조치일 뿐 常例가 될 수는 없는 일인데, 兵曹에서 연속해서 이어 徵發하여 交代로 上番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東伍軍이 武器를 팔고 의복까지 팔며 구걸하게 되어 원망하고 東伍를 禍本이라 하는 慘狀을 거론하면서 그 시정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

10) 宣祖實錄 卷48, 27年 2月 丙子.

11) 宣祖實錄 卷65, 28年 7月 丁丑條.

傳于政院曰 海州鍊兵事(中畧) 予意 海州一邑男丁籍其居 勿論良人內奴私賤悉發爲兵 本邑守令使喚人定數及 而盡蠲其身役(中畧) 若私賤之成才者 則其主或以官爵賞之 或以他奴酬之 要在使人興起 皆願爲兵….

라고 한 데 대하여 同 庚辰條에

備邊司啓曰(中畧) 海州各面 從其見在民丁 而勿論良人公私賤內奴庶孽 分等抄出以年少壯健伶俐 可以訓習者爲上等 依兵法東伍之規 十人爲隊(中畧) 如是期以數年行之不已 則保障之成 亦有望矣….

라 하여 일시의 응급조치로서 임시적인것 만이 아닌 長期的 展望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다.<sup>12)</sup> 이에 대하여 兵曹는

우리나라 軍兵의 役은 他人에 비해 尤苦한 故로 나라에서 法制를 세우기를 1인의 兵에 幫貼 數人을 주어 돕도록 하고, 또한 1年 休息하고 數朔 立番케 하였으니 이는 民力을 쉬어 고갈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東伍는 그렇지 못하여 안으로 幫貼의 도움이 없고 밖으로 本役의 고통이 있다. (中畧) 그 가운데는 公私賤·雜匠 및 正軍 등이 있어 한편으로는 그 本役에 응하고 또 한편으로는 東伍에 예속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東伍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은 것은, 자기 本官이 혹 優恤을 加하고 雜役을 除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에도 스스로 國家有事時에 戰守를 담당한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sup>13)</sup>

라고 하면서, 兵曹로서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하고 최소한의 上番軍이 필요함을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備邊司와 兵曹의 啓言사이에 東伍軍의 構成身分에 대하여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비변사에서서는 兩班·儒士·衙前之類까지, 병조의 경우에는 그 대신 雜匠·正軍을 각각 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차이는 前述한 바 있는 已往의 논의·조치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일단 정리하여 보는 것이 참고가 될 것 같다. 편의상 그 時點의 順序대로 번호를 달고 기록에 표현된 신분, 또는 신분을 구분할 수 있는 용어와 出典 및 時點을 摘記하고 끝에 기록의 주제와 發言者를 괄호안에 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公私賤 士族 庶孽, 西崖文集, 宣祖26年6月, (銃手鍊兵 器械製作, 柳成龍)
- ② 閑良 公私賤 朝官, 宣祖實錄, 26年7月, (訓練都監 砲手 훈련, 備邊司)
- ③ 公賤 私賤, 宣祖實錄, 27年2年, (私奴爲軍 관련문제, 柳成龍)

12) 宣朝實錄 卷94, 30年 11月 癸卯.

13) " " " " 戊申.

- ④ 良民 公私賤人, 宣祖修正實錄, 27年12月, (東伍軍 設置始末)
- ⑤ 良人 內奴 私賤, 宣祖實錄, 28年7月, (海州 東伍軍, 宣祖)
- ⑥ 良人 公私賤 內奴 庶孽, 宣祖實錄, 28年7月, (海州 東伍軍, 備邊司)
- ⑦ 公私賤 兩班 儒士 衙前, 宣祖實錄, 30年11月, (東伍軍上番, 備邊司)
- ⑧ 公私賤 雜匠 正軍, 宣祖實錄, 30年11月, (東伍軍上番, 兵曹)

여기에서 ⑤, ⑥의 內奴를 公賤으로, ⑧의 雜匠 또한 賤人으로 파악하면 주제에 따른 區分 舉論이나 강조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모든 경우에 公私賤이 抄發對象이 되었다는 사실은 다시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한편 ⑧의 경우에 正軍은 良人으로 인정해야 되겠거니와 兵曹의 위 啓言가운데

南畝耒耜之民 計口徧籍 強號爲兵 以救一時之急 其中或有公私賤…(· 점筆者)

이라고 한 내용으로 農民인 良人(民)이 편성의 기본대상이 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良人을 위주로 거기에 公私賤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sup>14)</sup> 다만 賤人가운데서 私賤의 경우에 그 抄發自體의 贊反論에서부터 奴主에 대한 보상문제에 이르기까지의 논의가 벌어져, 私奴가 賤人中의 主對象이리라는 점을 示唆하여 준다고 하겠다.<sup>15)</sup>

14) 사실 ⑦의 경우도 “勿論有無役公私賤…非但賤人 至於兩班儒士衙前之類…”이란 문맥으로 미루어 보아도 良人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①, ②의 경우는 銃(砲)手 훈련에 대해 국한된 논의이고, 그것도 ②는 훈련도감에 관한 내용이며, ③은 私奴에 대한 보상등의 문제가 논의된 경우이다.

15) 私奴抄發에 관한 문제의 논의는 ③의 경우 밖에도 여러군데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柳成龍은 宣祖28년의 啓言中에서 “私賤만이 홀로 국미이 아닌가”라고 하고 “私賤은 日滋月盛하고 良人은 漸就耗矣”라고 하면서 奴僕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西厓文集 卷8, 啓辭, 柳祖訊上疏回啓)

이미 분석된 바 있으나,<sup>16)</sup> 여기서 아무렵에 있어서 東伍軍編成의 구체적 實例를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즉 萬曆24年5月(宣祖29年)로 기록된 平安道 일부의 東伍軍編成名簿라고 할 「鎮管官兵編伍冊殘卷」에<sup>17)</sup> 나타난 기록을 통하여 그 신분구성을 窺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편성체에 安州鎮管은 營將이하 總員 1,247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前記한 분석(註16의 ①)에 따르면 軍總 1,192명 가운데 良民이 926명이고 奴는 266명으로 되어 있다.<sup>18)</sup> 이 數値를 構成比로 보면 총인원에 대하여 良民이 약 78%, 奴가 약 22%의 비율이 된다.

이제 분석의 근거가 되는 실제 편성의 한 두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右營 前司 前哨 1旗 1隊(殺手)

1隊總 邊末山

藤牌	金德進 奴九孫	萁笊	金德進 鄭仁成	長槍	奴連孫 奴萬春	長槍	奴邊守 奴彥春	鎗 鈹	奴世男 奴忠男	火兵	奴玄仁
----	------------	----	------------	----	------------	----	------------	--------	------------	----	-----

16) ① 車文燮：Ⅶ. 東伍軍 研究，朝鮮時代軍制研究，1973，檀國大學校出版部。  
 ② 陸士韓國軍制史研究室：韓國軍制史 朝鮮後期篇 1977，陸軍本部，(제1장 1절)

17) 이 「鎮管官兵編伍冊殘卷」은 柳成龍이 都體察使로 各地의 東伍軍을 편성토록 하였을 당시의 平安道일부의 편성기록이다. 安州鎮管의 경우 右營으로서 그 前司와 中司의 편성이 기록되어 있다. 左營(寧邊府鎮管)·後營(龜城鎮管)·後別營(義州鎮管)등도 기록이 되어 있으나 기초단위인 隊의 편성(軍兵數)이 완전치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18) 이 숫자는 총원 1,247명에서, 3隊로 이루어지는 旗의 長인 旗總이상 55명(기총 30명·哨官 13명·把總 3명·書記 4명·旗牌官 3명·中軍 1명·營將 1명)을 제외한 인원으로서 여기에는 隊總외에 軍牢馬夫 15·吹打手 36·旗手 79 합 130명이 포함되어 있다.  
 隊總은 良民이 73명이고 奴가 1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同 2旗 1隊(砲手)

2隊總 奴

島銃	奴 奴	島銃	奴 奴	島銃	— —	島銃	— —	島銃	奴 奴	火 兵	奴
----	--------	----	--------	----	--------	----	--------	----	--------	--------	---

다시 右營(安州鎭管) 前司의 구성을 도표로 그 신분만 표시하여 보기로 한다.

右營將(軍資主簿) 前司把總(出身)				
	前哨 哨官(出身)	1旗 旗總(良民)	1隊 殺手 2隊 殺手 3隊 殺手	良民 12명 奴 24명 (隊總2명 포함)
		2旗 旗總(良民)	1隊 島銃 2隊 島銃 3隊 島銃	良民 12명 奴 22명 (隊總1명 포함)
		3旗 旗總(良民)	1隊 島銃 2隊 島銃 3隊 島銃	良民 17명 奴 19명 (隊總1명 포함)
	中哨 哨官(出身)	1旗 旗總(良民)	1隊 射手 2隊 射手 3隊 射手	良民 36명 奴 無
		2旗 旗總(良民)	1隊 射手 2隊 射手 3隊 射手	良民 36명 奴 無
		3旗 旗總(良民)	1隊 射手 2隊 射手 3隊 射手	良民 36명 奴 無
	後哨 哨官(出身)	1旗 族總(良民)	1隊 射手 2隊 射手 3隊 島銃	良民 3명 奴 21명 良民 3명 奴 9명

19) 여기서 奴로 표시되지 않고 姓名이 기록된 경우는 良民으로 파악하였다. 2隊의 경우 성명은 —로, 奴의 경우 이름은 省略하였다.

		2旗 旗總(良民)	1隊 鳥銃 2隊 射手 3隊 射手	(隊業總 1명) 良民 無 奴婢12명 良民 21명 奴 1명
		3旗 旗總(良民)	1隊 射手 2隊 射手 3隊 射手	良民 36명 奴 無
	留哨(聿川) 哨官(出身)	1旗 旗總(良民)	1隊 射手 2隊 射手 3隊 射手	良民 36명 奴 無
	留哨(永柔) 哨官(出身)	1旗 旗總(良民)	1隊 射手 2隊 射手 3隊 射手	良民 36명 奴 無
		2旗 旗總(良民)	1隊 射手 2隊 射手 3隊 射手	良民 36명 奴 無

결국 旗總으로부터 그 以上은 良民·出身·主薄이며, 隊總以下 총432명 가운데 良民이 324명이고 奴가 108명으로 구성비율은 75%대 25%가 된다.<sup>20)</sup>

이 편성표에서 나타난 특징의 하나는 砲·殺手隊와는 달리 射手隊는 거의 良民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弓術이 전통적인 武藝라는 면도 있겠고 砲·殺手 訓練에 대한 인식부족 내지 賤都視하는 연관성도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sup>21)</sup>

또 左營인 寧邊鎭管을 살펴 보면 軍總 786명 가운데 良民이 499명이고 奴가 287명으로 그 비율은 63.5%대 36.5%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安州鎭管의 경우보다 良民의 비율이 떨어지고 奴가 높은 것을 볼 수 있

20) 이 가운데 隊總은 良民이 30명, 奴가 6명으로 나타난다.

21) 宣祖實錄 卷48, 27年 2月 庚申條에

「兵曹判書李德聲啓曰 近來人議紛紜 皆曰教兵何爲都是無用之技 弛緩之輩 不樂鈞束 胥動辭說 術惑群聽者非一 上年始教鳥銃 人皆笑其難成 且賤鄙其事 入屬之人 相繼謀避…」한 바 있다.

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良民이 3분의2에서 4분의3을 차지하고 그 나머지만이 奴로 充定되어 있음은 분명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부지방의 예를 전체적인 현상으로 확대·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지 모른다. 다만, 전반적인 경향을 미루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한다. 사실 東伍軍의 편성을 주도했던 柳成龍도

오늘의 일은 抄軍에 급해서 公私賤을 논하지 아니 하였다. 그러나 또한 마땅히 正軍을 먼저 抄發한 뒤에 公私賤에 미치어 條理가 있게 하여야 得軍도 많고 逃避者도 적을 것이다.<sup>22)</sup>

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성립기에 있어서 東伍軍의 신분구성은 良賤混成이 되, 良民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私奴인 賤人과 일부 兩班 中人등에 이르기까지의 혼성이라고 일단 이해할 수 있겠다.

### III. 東伍軍 身分構成變化의 實相

良賤混成이었던 東伍軍의 身分은 已往의 연구에 의하면 서서히 변화하여 英祖代인 18C初부터는 점차 賤隸化, 그것도 私賤軍化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sup>23)</sup>

즉 仁祖代에 그 身分의 整備가 시작되는 가운데 二重의 役을 지게 되어 富實한 良民은 빠져나가고, 賤人의 증가와 良民의 감소로 肅宗때에 가면 “良人의 貧者가 兼屬하고 公私賤의 貧不能自存者가 속하게 되어” 거의 賤隸軍化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英祖 12년을 전후해서는 東伍軍의 私賤充定, 즉 賤隸化가 “國家的인 조치로서” 이루어지고

22) 西厓文集 別集 卷4, 雜著, 備邊雜錄.

「今日之事 急於抄軍 勿論公私賤爲之 然亦當先抄正軍 後及公私賤 使有條理 則得軍必多 而逃避者少矣…」

23) 東文變: 前揭書, pp.211~214.

있음을 備邊司의 啓辭와 續大典 兵典의 기록등을 근거로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英祖 13년 12월에 侍讀官 鄭益河의 啓言에 나타난 사실과 그 논의의 歸結이 그러하고, 英祖 22년에 간행된 續大典의 내용이 그것을 法制化하고 있다는 것이다. 鄭益河의 啓言과 英祖의 答변은 다음과 같다.

대저 東伍의 役은 毋論良賤하고 隨闕充定하는 것이 應行之例였는데 이른바 私賤은 不實하기 莫甚한 고로 列邑守令이 부득이 良役之人을 그 烟役을 제하고 東伍에 充當하였습니다. 비록 忠原鎭 소속 8邑만 말씀드리더라도 有身役良人이 東伍에 隨行하는 것이 여러 해 계속된 바입니다. 積年 隨行한 고로 行陣間事에 있어서도 능히 練熟할 수 있었읍니다. 그런데 往者에 朝家가 그 一身疊役을 염려하여 良東伍는 한가지로 모두 頤下하고 그 代는 私賤으로 盡數充定하게 하였습니다. 고로 守令된 자는 곧 疲殘 雇工 및 私奴로서 艱手充數하고 良東伍는 朝令에 따라 一併頤下하였으며 그들의 烟役은 전과 같이 還復하였는데, 烟役之苦가 兼役보다 심한 까닭에 良東伍頤下之類가 모두 전대로 東伍에 隨行하기를 원하나 그 守令이 또한 감히 스스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었읍니다. 당초 良東伍 頤下之令은 爲民의 뜻에서 나온 것이나 民情이 원하지 않음이 이와같고, 또한 私賤·雇工이 無依한 丐乞之類와 다를 바 없어 本邑 私點時에도 逃亡이 많으니 하물며 緩急之際에 그 힘을 얻을 수 있겠읍니까. 이는 마땅히 變通之道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상이 이르되 당초 此令은 그 疊役을 염려한데서 나온 것이다. 朝令을 비록 續續 變改함이 不可하나 이제 儒臣의 말을 들으니 또한 깨닫는 바가 있다. 이 뜻을 出舉條하여 備局으로 하여금 稟處케 함이 가하리라.<sup>24)</sup>

이에 대하여 備邊司에서는 별반 조치가 없다가, 다음 해 4월초에 鄭益河가 다시 陳達하고 英祖가 또한 다시 명령하자 5월에야 回啓한 바 原文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4) 備邊司臚錄, 英祖 13年丁巳 12月17日.

司啓辭 昨年十二月十七日 召對入侍 因侍讀官鄭益河所啓 良東伍頰下之令變通事 有令備局稟處之令矣 此事之陳稟變通 在於丙辰 卽伊時陳稟者 以其戰卒 皆成兼役 爲慮身役苦重 臨急掣碍之患 只令嚴禁疊役而已 初無良東伍頰下 私賤盡充 良賤必爲區別之事 稟定後知委外方之時 且慮舊軍之以疊役頰下後 新入者未必無生疏之弊 其中頭目之屬 雖或有疊役 今姑勿頰 待新入者 年久習熟後 次次許頰之意 論理分付釐 知委初頭 外方果有若干釐正 而因守令之厭憚 或謂軍伍生疏 或謂私賤疲殘 果不無疑難之言 而皆不知當初稟定知委之本意矣 昨年以後 又凶歉 軍伍代頰等事 並皆姑停 此等新變通 尤在停廢中 朝令之續續變改 亦陟顛倒 申筋與否 前頭可以觀勢量處 今姑置之何如 答曰允<sup>25)</sup>

당초의 陳稟變通은 丙辰年, 즉 英祖 12년에 있었고, 또 英祖 13년부터는 凶歉으로 軍伍代頰등을 姑停中이며 朝令을 자주 變改하는 것도 또한 잘못되는 것이니 앞으로 형세를 보아 量處하되 지금은 우선 그대로 두자고 한 것이다.

그런데 英祖 12년경부터의 東伍軍의 賤隸化라는 이와같은 주장에는 몇 가지 다시 살펴볼 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備邊司의 啓辭로 보아 良東伍를 頰下하라는 것이 아니라 疊役의 禁止가 本意임이 분명하다면, 비록 문제가 되는 疊役의 主對象이 良丁이라 할지라도 身分의 次元에서 반드시 賤人代充토록 되지만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한 것이다. 실제로 그 啓辭가운데 해당부분(·점)도 “다만 疊役을 嚴禁했을 뿐 처음 良東伍頰下는 없었고 私賤盡充해서 良·賤을 반드시 區別할 것을 稟定한 후 外方이 知委…”로 해석하기 보다 “단지 疊役을 嚴禁토록 했을 뿐으로 당초 良東伍를 頰下하고 私賤으로 盡充하여 良賤을 반드시 區別하라는 일은 없었는데 稟定後…”라고 하는 것이 어떨가 싶기도 하다. 또한 그 稟定變通의 세부적 整理內容은 찾을 수 없었으나 적어도 그 大綱은 되는 것으로 보이는 英祖 12년 右

25) 備邊司臚錄, 英祖 14年戊午 5月12日.

議政 宋寅明의 다음과 같은 啓言도 變通의 重點이 兼役문제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良役을 아직 變通하기 전에 軍丁의 弊를 비록 일일이 厘正하기는 不能 하나 그중 騎步兵의 東伍兼役은 더욱 可矜합니다. 근래 東伍는 事役이 甚繁하고 收歛이 또한 많아 그 드는 糜費가 良役身布보다 아래가지 않는데 騎步兵 納布之類가 또 이 役을 맡아 어찌 支堪하겠습니까. 東伍는 私賤으로서 充定함이 例이며 이때 良丁이 비록 難得이라 하나 私賤에 이른 즉 西北지방을 제외한 諸道는 많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는데 守令輩가 取怨을 꺼려 搜括에 대만하고 兩班 및 閑散은 易於見充하여 문득 모두 兼役합니다. 三南東伍가 거의 모두 兼役하니 일의 無據함이 이에서 더 심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로는 騎步兵 및 기타 納布軍의 東伍兼役을 일체 嚴禁하고 曾前에 이미 充定된 자는 또한 모두 일일이 代愼하며, 兵使·營將에게 각별히 嚴飭하여 禁斷토록 하되 매년 巡操時에 兒弱一體를 查點해서 만약 兼役者가 있으면 守令을 狀論罷職토록 하는 일을 따로이 定式으로 하고...<sup>26)</sup>

라고 하면서 御史 發遣時에도 이 일에 관한 條目을 添入하자고 건의하여 왕의 승락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東伍軍의 愼下와 充定이라는 문제는 兼役良丁의 東伍軍에서의 愼下와 公私賤, 특히 私賤으로의 充定이라는 하나의 基準의 側面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身分區分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6) 備邊司臚錄, 英祖 12年丙辰 5月16日.

又所啓 良役未變通之前 軍丁之弊 雖不能一一厘正 而其中旗步兵之東伍兼役 尤爲可矜 近來東伍 事役甚繁 收歛亦多 其所糜費 不下於良役身布 而旗步兵納布之類 又當此役 其何以支甚 東伍則例以私賤充定 此時良丁 雖曰難得 至於私賤 則西北外諸道 不患不多 而守令輩 憚於取怨 怠於搜括 兩班及閑散 易於見充 輒皆兼役 三南東伍 幾皆兼役 事之無據 莫此爲甚 此後則旗步兵及其他納布軍 東伍兼役 一切嚴禁 曾前已充定者 亦皆一一代愼 而令兵使營將 各別嚴飭禁斷 每年巡操時 兒弱一體查點 如有兼役者 則守令狀論罷職事 別爲定式 紳衣發遣時 兼役一事 添入條目 如有犯禁者 則當該兵使營將 與守令一併定罪之意 預先嚴飭 何如上曰 兼役之弊 聞甚駭然 依所達爲之可也.

疊役 또는 兼役의 解消, 그 자체에 焦點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續大典에 있어서도 “勿論公私賤充定”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새삼스러운 신분구분이라고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예컨대 “盡用公私賤人 入東伍”<sup>27)</sup>라던가 “勿論公私賤爲之”<sup>28)</sup>라는 표현과 함께 살필 부분도 있어 보인다. 또한 續大典의 다음 항에 “自他邑移來無公文者 勿論有役無役 良人充相當役 私賤充東伍”라는 내용에 있어서도 自他邑移來無公文者라는 것이 대개 避役逃匿의 성향을 띤 것이어서 軍布收納의 문제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29)</sup>

그리고 英祖 12년(1732년)이후에 있어서의 東伍軍의 편성신분에 대하여 그로부터 60여년 뒤이고, 續大典이 간행된 때로부터는 50여년 뒤인 正祖22년(1798년)의 慶尙道 河東의 東伍軍兵保人戊午式改都案을 통하여 그 실재를 파악할 수 있다.<sup>30)</sup> 이 河東의 경우는 前述한 바 있는 平安道

27) 註(4)同

28) 註(22)同

29) 예컨대 備邊司謄錄 英祖 12년11월11일 記事에 보면 京畿別遣御史 金尙魯는 다음과 같이 上啓하고 있다.

臣聞豐德良丁則爲避軍役 逃匿於松都 通津良丁則逃匿於江華 而若言其弊 則豐德特甚 故此兩邑 最未充額之弊 專由此云 今若使之——刷選 則許多民人 亦不無騷擾之患 此則臣下去之後 盡爲查推 令兩都逐名收布 移送於該邑 何如.

이 문제는 邑과 府사이의 事體未安이라는 점과 江華의 募民入居之規 및 騷擾之患, 그리고 順免時의 隣邑에 미치는 영향등,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論難을 벌인 끝에 다음에 2월말경에 該邑에서 兩都에 送人收布토록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備邊司謄錄 英祖 12년12월초3일 및 同 13년 2월26일 참조.

30) 이 改都案은 서울大 奎章閣 所藏圖書(奎12333)로서 표지를 제외한 23枚 1冊으로 되어 있다. 첫 張에 河東府東伍軍兵保人戊午式改都案이라 題目이 있고, 本文의 첫머리에는 嘉慶四年八月日 河東府東伍軍兵保人戊午式改都案이라고 되어 있어 嘉慶4년, 즉 正祖 23년 己未年의 전해인 正祖22, 戊午年의 改都案임을 알 수 있다.

鎗管官兵編伍冊殘卷과 비교하여 營이라는 단위가 없이 部가 나타나는 점과 各隊의 종류, 이를테면 殺手·鳥銃·射手의 區分表示가 없이 隊長다음에는 第一 아무개로부터 第十아무개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난다. 물론 各 軍兵名다음에는 保가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左別中哨

1旗2隊 第七 鄭萬江

安州鎭管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성격·체제·규모등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兩者 모두 東伍軍의 名單이 기록되어 있고, 改都案은 北邊國境지역이 아닌 南部地方의 것으로 孝宗代以來 給復·給保등의 조치가 논의·시행되던 경상도의 例라는 점에서 오히려 당시의 현황과 약에 기초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改都案에는 所屬 司를 알 수 없는 左別中哨 일부와 右部後司右哨로부터 同 後哨 및 左部左司左哨일부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완전한 隊를 형성하고 있는 右部後司右哨의 2旗3隊로부터 同 3旗의 3個隊·同 後哨1旗의 3個隊를 일단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면, 우선 旗總 2명은 모두 良民이고 그 保人 각1명씩도 모두 良民으로 나타난다.<sup>31)</sup> 東伍軍은 隊長이하 火兵·卜馬軍까지 1隊 13명씩 總 7個隊 91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良民이 62명이고 奴가 29명으로 나타나며 다시 그 가운데 火兵 7명에는 良 6·奴 1명, 卜馬軍 7명에는 良 2·奴 5명이 포함되어 있다. 隊長 7명은 모두 良民으로 나타나는데 대상이외의 隊에 있어서도 그점은 마찬가지이다. 다음 保에 있어서는 일부만 나타난 左別中哨 1旗2隊의 5명과 各隊의 卜馬軍에게는 2명씩의 保가 딸려 있으나 그 밖에는 모두 軍 1인에 保 1人씩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7個隊의 保 98명가운데 良民이 64명 奴가 34명으로 나타나 있다.

이로서 보면 賤人으로 東伍를 充定하는 身分的 區分의 기준이 세워진 英祖때로부터 半世紀가 지난 뒤에도 東伍軍의 身分構成은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良賤混成이 계속되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물론 18세기 무렵의 軍政에 있어서 軍籍이 그 事實性을 의심받을 정도로 虛

保 崔云孫 年肆拾捌 父貴才係河東住八助 長四尺 面鉄髯無 己亥入

또는 右部後司右哨 2旗

3隊長 田貴獅 保 奴月粟 年肆拾參 父夫之

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改都案은 保人의 名簿로 보이나 保가 지급된 東伍軍의 名單도 동시 기록되어 있으므로 東伍軍 구성자체를 살필에 있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31) 여기서 良民과 奴의 구분은 安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奴로 표시된 경우만 奴로 파악하고 姓名이 갖추어 기록된 경우는 良民으로 파악하였다.



額·虛薄의 弊가 學論되지만, 이 改都案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그보다는 오히려 前述한 바도 있는 疊役과 관련된 측면에서 서로 합치 되지 않는 기준과 실재를 이해함이 옳으리라고 여겨진다.

사실 東伍軍의 疊役은 宣祖代부터 論難의 대상이 되면서도 해결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對外的 緊張狀態로 말미암아 軍事力強化의 측면이 강조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仁祖 5년의 管將節目에 들어 있는 出身 武學 新選의 勿入東伍 別爲作隊라는 내용도 신분의 부각이기보다는 군사력강화의 차원에서의 조치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sup>32)</sup> 여하간 응급적인 조치로서 편성될 때에 이미 本役이 있으면서 다시 東伍軍에 定屬되어야 했던 疊役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給復·給保 등의 부분적인 개선책이 시행되다가 兼役良丁의 順下조치가 취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良役 自體에서 疊役으로 얽혀있는 상태에서 軍役이 收布라는 財政的 收入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國防의 主力인 東伍軍은 不實하여 질 수 밖에 없으며<sup>33)</sup> 그나마 維持하자면 賤人만이 아닌 混成이 될 수 밖에 없으리라고 여겨진다. 예컨대 正祖 16년의 榮川郡의 상황을 보면, 당시 戶總 3,283호내에 朝官 班族 僧戶 女獨戶 病廢 巫女 內奴 寺奴 校院奴 私奴 忠衛 業武 校三班 官屬등을 제외한 良役應保戶는 불과 500호인데 京司上納旗步兵 700명 등 收布 都數는 1,435명이고, 東伍步軍保人 並 1,130명중 半良半賤으로 良

32) 仁祖實錄 卷16, 5年4月 丙辰條의 기록은 營將節目 마련의 목적 자체가 專門의 軍事職으로서 營將을 택하여 操鍊을 專管하고 領率出戰케 하려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관계 項의 내용은 속오군의 정비강화와 전문적 군사능력 소유자의 별도 편성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一, 軍兵就東伍原案中 除去老殘 抄擇丁壯 其中技藝成就連次居首者 田稅外給復一結 老殘則作爲一隊 或助軍餉 或備給資裝.
- 一, 出身武學新選 勿入東伍 作爲別隊 私砲手山尺才人及日本被擄刷還砲劍成材者亦作別隊 減其戶役 常加操鍊.

33) 英祖實錄 卷68, 24年9月 戊寅.

正言 朴盛源은 口錢을 행하자는 上疏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且捻東伍 卽國家緩急之卒 而專念於收布之政 故惟以貧殘無依之類 總編而入籍 脫有不虞 則不爲國家之用 而盡爲渙散 若能行口錢 而罷良役 悉以富實之民 充定於東伍...

軍 565명등 或收布 或立役은 都數 1,348명으로 戶當 5丁씩이라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다.<sup>34)</sup> 여기서 東伍步軍保人의 賤軍565명을 奴戶600餘戶中 私奴戶등에 分배할 경우의 상황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前述한 기준과 실제의 不合致는 이 시기에 있어서의 身分의 混亂狀과 관련하여서도 살필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東伍軍의 良賤混成이라는 사실자체가 軍役의 役賤化라고 할 수 있는 동시에 良賤間의 身分의 淆亂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직접 연관시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冒稱현상이다.

비록 編戶之賤이라도 모두 갓을 쓰고 道袍를 끌어 스스로 標別하는 故로 東伍 武學者類가 兩旅籤中에 竄身하여 原軍이 日縮하고 關伍가 幾半이라 ...<sup>35)</sup>

한 바와 같은, 흔히 거론되는 兩班冒稱과는 차이가 있는 뜻으로서는 어찌면 오히려 虛薄, 또는 虛名에 가까울지 모르는 현상이 改都案에 記載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가라는 점이다.<sup>36)</sup>

그러나 결국 良丁頃下 私賤充定이라는 東伍軍充定의 기준은 身分의 區分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良丁疊役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시행하게 되었으며 처음부터 그 實行이 停止되기도 하였고 현실적으로 는 河東府의 경우로 미루어 볼 수 있듯이 여전히 東伍軍의 身分構成은 良賤混成이었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당시에도 貧殘無依之類

34) 公車文(奎章閣 所藏)76, 正祖 壬子 4月 榮川郡守李勉競上疏 14日.

35) 正祖實錄 卷7, 3年3月 壬辰條

壬辰 合統禦營于江華府 先是戊戌 反庫御史沈念祖別單曰(中略) 一軍制則前部武學軍一千三百三十二名 後部東伍軍一千三百三十二名 此原軍也(中略) 東伍武學 乃是執爿前驅者 而近來人心巧僞 雖編戶之賤 皆戴笠子曳道袍 以自標別 是故東伍武學者類 竄身於兩旅籤中 原軍日縮 關伍幾半 數十年來 不能填代 其餘存者 皆疲癯老疾無所用者...

36) 改都案의 名單다음에는 그 父를 夫之라고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혹은 至貧無賴之類라고 하면서 良賤參用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sup>37)</sup> 이로 보아서는 마찬가지로의 良賤混成이기는 하나 成立期와 비교해서 이를테면 그 構成身分의 처지가 下落하였다고 볼 측면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IV. 맺음말

宣祖代 成立期の 東伍軍은 원래 良役인 軍役に 본격적으로 賤人도 抄定되기 시작하였다는 면에서 그 身分構成을 良賤混成이라고 말하여 왔다. 이 良賤混成은 壬辰倭亂이라는 戰爭에 대한 應急의 조치로 편성된 東伍軍이 地方軍의 核心主力으로 자리잡으면서 軍役의 변화이며 軍役을 통한 실제에 있어서의 身分的 變化로도 이해되게 되었다. 그리고 良賤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哨官以上の 官僚體系에 들어 갈 수 있는 지휘관급에는 出身以上の 上位階層이 포함되나 隊長以下 일반 軍병은 良民과 奴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良民과 奴의 구성비율은 각각 3분의2내지 4분의3, 3분의1내지 4분의1로서, 仁祖 11年の 東伍軍 總 9萬餘명에 이 비율을 적용해본다면 良民이 6萬에서 7萬, 奴가 3萬에서 2萬명이 된다.<sup>38)</sup>

이 東伍軍은, 처음에는 일부 身役免除등의 조치가 취하여 지기도 하였으나, 근본적으로 疊役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더욱 對外關係가 緊張狀態였던 17세기중에는 強化를 추진하면서 給復·給保등의 부분적인 문제의 改善策을 시행하였다.

37) ○註33)同

○純祖實錄 卷11, 8年8月 甲午朔

…東伍軍者 皆是至貧無賴之類也

○日省錄 正祖 17年2月26日

召見藥院提調金文淳…御營大將趙心泰及黃海兵使柳文植于誠正閣.

…趙心泰曰 良賤參用 牙兵與東伍 別無異同 而東伍亦是參操正軍矣….

38) 仁祖實錄 卷28, 11年2月 丙寅

同 14年7月 丙午條에는 8萬6千73人으로 나와 있다.

결국 疊役問題は 英祖代인 18세기 초에 이르러 兼役良丁의 順下와 私賤充定이라는 조치로 그 해결을 企圖하였으나 그 결과로 나타나야 할 身分構成의 변화, 즉 전반적인 私賤으로의 편성이 실제의 正祖代의 河東府改都案에서 보이지 않았다. 同改都案에는 良民과 奴의 비율이 2대 1로 成立期의 것에 비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전반적인 避役과 身分冒稱, 또는 奴婢堆刷官을 폐지할 정도의 당시의 현실적 조건과 관련된 기준과 실제의 乘離로서 兼役良丁의 順下만으로는 본질적인 해결이 될 수 없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꾸어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朝鮮後期の 軍役문제는 새삼스러울지 모르나 財政的 收入의 대상으로서 良役과 國防上의 실제 軍編成의 중요성이라는 兩面性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良役收布라는 財政的 重要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실제 軍役に 있어서의 疊役이라던가 그 不實化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그런만큼 당시의 統治體制上 軍役과 身分의 相關性은 財政的 意味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으로 파악되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 같다.